

# FTA 전문가 컨설팅 상주관세사 인적용역 과업지시서

I. 과업명 : FTA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상주관세사 인적용역

II. 목적 : 충청남도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 등

III.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1.01.31 까지

## IV. 과업방식

- 관세사가 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 V. 과업내용

1. FTA활용을 위한 세번·세율의 분류, 원산지기준의 확인 및 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의 발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2. 자유무역협정문, FTA특례법에 따른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3. FTA활용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오프라인 컨설팅)
4. 충남FTA센터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해당 활동에 부대되는 강의안 작성을 포함)
5. 충남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6. 기타 충남FTA센터가 요청하는 내용

## V.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FTA협정 및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일반 수출입 통관 취급이 불가능한 전국 단위 컨설턴트로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충남FTA센터 및 충남FTA센터의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방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충남FTA센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남FTA센터는 과업수행자에게 현장 방문에 소요된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비의 지급은 충남FTA센터의 내부 규정을 따른다.
- FTA무역종합센터는 계약금액 금오천칠백만원(₩57,000,000, 부가세 포함)을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실제 용역 수행일을 산정하여 일할 지급한다.
- 대금의 지급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매월 업무수행 내역서를 충남FTA센터에게 제출해야 하며, 충남FTA센터가 이를 승인하면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FTA무역종합센터가 지급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후일정, 사정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지시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